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29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권향엽 · 김현정 · 진성준
김용만 · 전진숙 · 박해철
임미애 · 최민희 · 박지원
박용갑 · 김 현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로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전자장치 부착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

이에 스토킹행위자가 해당 잠정조치와는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잠정 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는 것으로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스토킹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및 제 31조의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을 “부착(제2항 후단에 따라 부착을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스톱킹행위자가 제1항의 잠정조치와는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본문에 따른 잠정조치의 집행을 위한 전자장치로 본다.

제3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부착을 생략한 경우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이미 행하여진 전자장치 부착은 집행 종료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6 및 제3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호의2에 따른 스톱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④ ~ ⑧ (생략)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

----- . 다만, 제31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부착을 생략한 경우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이미 행하여진 전자장치 부착은 집행 종료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